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94
----------	-------

발의연월일 : 2025. 11. 14.

발 의 자 : 김재원 · 김준형 · 서왕진
박은정 · 황운하 · 최민희
신장식 · 한창민 · 강경숙
백선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로야구 · 프로축구 · 배구 등 국내 프로스포츠가 연간 수천만 명의 관중을 유치하면서 스포츠 관람이 국민 여가활동의 핵심 문화로 자리 잡았으나, 일부 암표 조직이 매크로 프로그램과 대리구매 계정 등을 활용해 입장권을 대량 확보한 후 고가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건전한 티켓시장 질서와 관람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암표 거래는 매크로 사용 여부를 특정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개인 계정 · 해외 서버 · 대리 구매 등을 조합하는 신종 방식이 확산되면서 현행 규정만으로는 실질적인 단속과 제재가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초과한 재판매를 금지하고, 보다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불법 압표 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억제하고 공정한 티켓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

아울러 과징금 부과를 위한 관계기관 자료제출 요구 및 과세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반복적·조직적 압표 행위에 대한 조사·적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상적인 관람객이 피해받지 않는 건전하고 투명한 스포츠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기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

법」 제75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의3(과징금)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u> <u>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u> <u>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u> <u>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u> <u>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금융기관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u>

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75조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부과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